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임병운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다. 상정일자 : 2014년 12월 10일

-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임병운 위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임.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장애 명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로 수정(안 제6조)
 - 정신지체장애인 → 지적장애인
- 설치허가 취소자의 해지일 이후 설치 신청 금지조항 삭제(안 제7조)
- 사용료 부과·징수기준과 방법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8조)
-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 현행 조례에서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 사용료 부과·징수기준과 방법에 대한 근거 조항에서 기존 조례에는 해당 기관의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체 규정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함.
-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양식을 수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로, “설치에 관한”을 “설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전” 을 “1개월 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해당 기관의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설 치에 필요한----- -----.</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p> <p>2. 3. (생략)</p> <p>② 공공시설내의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 ----- -----.</p> <p>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조례에서 ----- 따 른다.</p>

<p>제3조(사전공고) 도지사,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u>1월전</u>에 이를 공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전공고) ----- ----- ----- ----- <u>1개월 전</u>----- -----.</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u>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탁할 수 있다.</u></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u>----- ----- ----- ----- -----.</p>
<p>제7조(계약해지) ① <u>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② <u>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체결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u></p>	<p>제7조(계약해지)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u>1개월 전</u>----- -----.</p> <p><삭 제></p>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8조(사용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자	주소		
인적사항	성명		<u>주민등록번호</u>

[별지 제1호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자	주소		
인적사항	성명		<u>생년월일</u>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

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

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